

신구조문대비표

「실용신안법」

실용신안법 [시행 2025. 10. 1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, 타법개정]	실용신안법 [시행 2027. 3. 16] [법률 제21953호, 2026. 9. 15, 일부개정]
제21조(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) ① (생 략)	제21조(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.	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	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 때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